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공무원연금기금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 괄	1
2. 일반회계	8
3. 공무원연금기금	14

II . 검토의견

[일반회계]

1. 국가시험시행(1631-300)	19
가. 개 요	19
나. 근로감독관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 7급 채용 예산 추가반영 필요	21
2.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1849-304)	25
가. 개 요	25
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노력 필요	26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934-531)	32
가. 개 요	32
나. 국제기구 주니어 직위에 대한 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확인 필요	33
4.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1946-501)	38
가. 개 요	38
나.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업의 면밀한 일정 관리 필요	39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2044-303)	46
가. 개 요	46
나.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47
6.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2044-306)	51
가. 개 요	51
나. 신속하고 내실있는 재해보상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52
7.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7031-500)	58
가. 개 요	58
나. 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시스템 점검 등 필요	59

[공무원연금기금]

8. 대여학자금 융자(3141-321)	61
가. 개 요	61
나. 대여학자금융자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62
9.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68
가. 개 요	68
나.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규모 확대 필요	69
10. 주택사업관리(3151-333)	74
가. 개 요	74
나.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주택임대보증금 편성 필요	75
11. 고객지원사업(3162-302)	78
가. 개 요	78
나. 「공무원연금」 웹진 이용 활성화 필요	79

I.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괄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세입액은 1,100억 9,700만원, 세출액은 6조 8,182억 600만원으로 편성됨.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세입	62,005	110,097	48,092 (77.6%)
세출	6,408,567	6,818,206	409,639 (6.4%)

(1)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예산 620억 500만원 대비 77.6% (480억 9,200만원) 증액된 1,100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 6조 4,085억 6,700만원 대비 6.4%(4,096억 3,900만원) 증액된 6조 8,182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음.

(3)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수입·지출의 개괄적 구조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부상, 질병, 장애를 당한 경우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6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과 함께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설치되었음.

정부회계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모든 수입·지출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중이나, 기금 운영 상 공단 내부적으로 사업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 자체규정인 「회계규정」에 따라 10개 회계(연금회계, 퇴직수당특별회계, 재해보상특별회계, 대여학자금특별회계, 금융자산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설사업특별회계, 융자사업특별회계, 고객지원특별회계, 기금운영회계)로 세분하여 계리하고 있으며,

각 회계별 수입액으로 비용 지출 후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금융자산회계로 이관하여 운용·관리하고, 부족시 금융자산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음.

□ 회계별 사업현황

회계	사업	내용
연금회계	연금사업	공무원·국가 등으로부터 기여금·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연금수급자 및 퇴직자에게 퇴직급여 등으로 지급
퇴직수당특별회계		
재해보상특별회계	재해보상사업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부상·장해 또는 사망 시 유족보상금 등 공상급여 지급 - 재해로 인해 주택손실을 입거나 공무원 본인 등 사망 시 부조급여 지급
대여학자금특별회계	학자금대여사업	공무원 본인·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 도모
금융자산회계	금융자산운용사업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 대체 등 금융상품에 투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	무주택공무원에게 시중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건립·임대하여 공무원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시설사업특별회계	시설운영사업	경쟁력있는 후생복지시설(호텔, 골프장 등)을 운영하여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융자사업특별회계	공무원연금대출사업	가계자금 대출을 통한 공무원 생활안정
고객지원특별회계	고객지원사업	-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은퇴교육 - 퇴직 후 봉사활동을 통한 공직경험의 사회 환원 지원 - 공무원연금지 제작
기금운영회계	기금운영지원업무	기금 관리운영업무 지원

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내용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규모는 2025년의 33조 7,737억원에 비해 4.1% 증가한 35조 1,619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수입·지출	337,737	351,619	13,882 (4.1%)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의 약 80%는 법정의무지출인 연금사업과 재해보상사업 수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의 경우 전체 수입액 35조 1,619억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금과 보전금이 21조 7,218억원(61.8%), 공무원의 기여금이 7조 1,441억원(20.3%)으로 나타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지출은 28조 6,455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81.5%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기타 수입과 지출은 기금의 자산증식과 공무원복지사업을 위한 것으로, 융자금원금회수 및 여유자금 회수 수입이 4조 7,784억원(13.6%), 재산수입 및 잡수입이 1조 5,176억원(4.3%)이며, 학자금 등 융자사업 지출이 9,230억원(2.6%), 주택·시설사업 및

기금운영비 관련 지출이 6,030억원(1.7%), 여유자금운용이 4조 9,904억원(14.2%) 편성되었음.

[공무원연금기금의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른 수입구조]

(단위: 억원)

항목	국가·지자체의 부담금·보전금	공무원의 기여금	재산수입	융자원금회수 여유자금회수	합계
금액	217,218	71,441	15,176	47,784	351,619
비중	61.8%	20.3%	4.3%	13.6%	100.0%

[공무원연금기금의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른 지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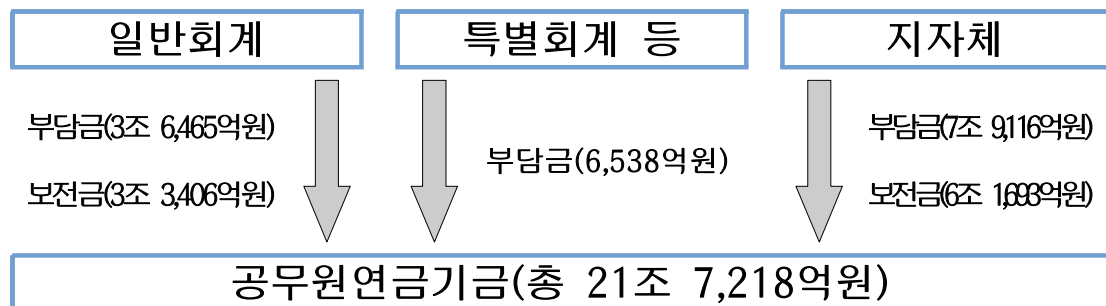
(단위: 억원)

항목	연금급여	학자금 등 융자사업	주택· 시설사업 등	여유자금 운용	합계
금액	286,455	9,230	6,030	49,904	337,737
비중	81.5%	2.6%	1.7%	14.2%	100.0%

다. 기금의 전입·전출 구조

공무원연금기금의 다른 회계·기금·지자체와의 거래를 보면,
 다른 회계·기금·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의 경우 연금부담금,¹⁾ 대여
 학자금부담금 등²⁾의 부담금 항목과 보전금³⁾ 항목이 있는데, 2026
 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총 6조 9,871억원,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6,538억원, 지자체로부터 14조 809억원 등 총
 21조 7,218억원이 전입될 계획임.⁴⁾

[2026년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입금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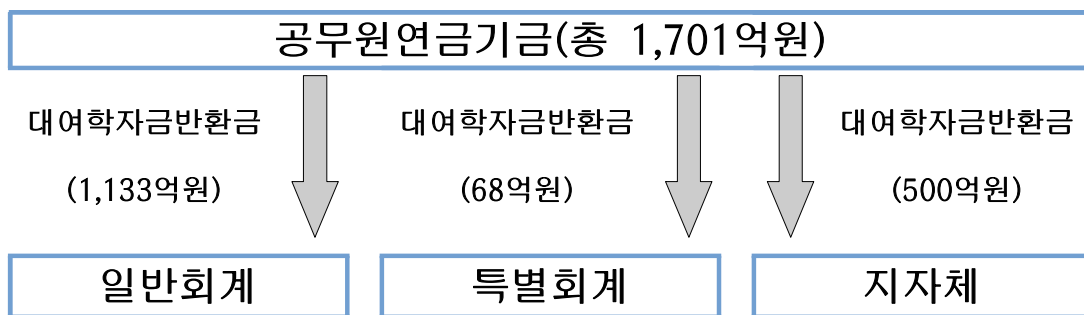


- 1)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
- 2)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 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포함.
- 3)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액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납부하는 금액
- 4) 회계-기금 간 거래시에는 기금운용수익으로부터의 기금전입금 충당금(이하 “기금운용수익충당금”)을 보전금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어 보전금 규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학자금반환금 총 1,701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8항⁵⁾ 및 관련 훈령에⁶⁾ 따라 기금운용수익 중 보전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이하 “기금운용수익충당금”)의 경우, 2024년의 결산상 현금수익(3,895억원)의 30%인 1,168억원을 2026년 기금전입금으로 계상함.

[2026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 계획안]



5)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6)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계산방식)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 - (유형자산평가이익 +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 × 기금전입률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480억 9,200만원(77.6%)이 증액된 110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주요 증액 사유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을 위한 전입금 예산 1,031억 1,100만원이 반영된 것임.⁷⁾

[일반회계 항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	
	예산(A)	구성비	예산(B)	구성비	(B-A)	%
관유물대여료	5	0.01	4	0.004	△1	20.0
기타경상이전수입	1,349	2.2	1,586	1.4	237	17.6
면허료및수수료	1,120	1.8	1,382	1.3	262	23.4
잡수입(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	0.04	25	0.02	-	-
잡수입(수입대체경비)	4,020	6.5	3,989	3.6	△31	△0.8
전입금	55,486	89.5	103,111	93.7	47,625	85.8
합 계	62,005	100.0	110,097	100.0	48,092	77.6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4,096억원 3,900만원(6.4%) 증액된 6조 8,18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예산안의

7) 대여학자금 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잉여액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차년도에 예산을 반환하고 있는데 2026년도 국가 예산의 경우 2024년도 이월액(2,058억 7,400만원)에서 2025년도 대부예상액(804억 5,400만원)과 2025년도 반환액(554억 8,600만원)을 차감한 잉여액이 발생, 그 외에 잉여액의 증감 등을 고려 331억 7,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1,031억 1,100만원의 잉여액이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됨.

일반회계 총 예산액 507조 4,468억원의 1.3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 비하여 점유비가 0.01% 포인트 감소하였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대적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정부 전체	4,736,594	5,074,468
인사혁신처	64,086 (1.35%)	68,182 (1.34%)

가. 성질별, 분야·부문별 내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경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기본적 경비가 2025년도 대비 9억 7,600만원(1.2%) 증액된 816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사업비는 2025년도 대비 150억 900만원(9.7%) 증액된 1,700억 9,6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부담금(공무원연금부담금)은 2025년도 대비 3,936억 5,400만원(6.4%) 증액된 6조 5,664억 7,000만원으로 96.3%를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 증감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	
	예산(A)	구성비	예산(B)	구성비	(B-A)	%
기본적 경비	80,664	1.3	81,640	1.2	976	1.2
-인 건 비	70,949	1.1	70,953	1.0	4	0.0
-기본경비	9,715	0.2	10,687	0.2	972	10.0
일반사업비	155,087	2.4	170,096	2.5	15,009	9.7
국가부담금	6,172,816	96.3	6,566,470	96.3	393,654	6.4
합 계	6,408,567	100.0	6,818,206	100.0	409,639	6.4

또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부문별 구성내역은 일반지방행정분야에 3.7%인 2,517억 3,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6.3%인 6조 5,664억 7,000만원으로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부문별 내역]

(단위: 백만원)

분야·부문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	
	예산(A)	구성비	예산(B)	구성비	(B-A)	%
일반지방행정분야	235,751	3.7	251,736	3.7	15,985	6.8
- 정부자원관리	150,232	2.3	165,316	2.4	15,084	10.0
- 일반행정	85,519	1.3	86,420	1.3	901	1.1
사회복지분야	6,172,816	96.3	6,566,470	96.3	393,654	6.4
- 공적연금	6,172,816	96.3	6,566,470	96.3	393,654	6.4
합 계	6,408,567	100.0	6,818,206	100.0	409,639	6.4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의 특징은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세출예산의 대부분(96.3%)을 차지한다는 점임.

전출금은 국가공무원 전체(국방부 등 제외)의 연금(퇴직급여)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과 퇴직급여 지출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보전금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보전금은 전년대비 508억 200만원 증가한 3조 3,405억 7,200만원으로 1.5% 증가함.

한편, 인사혁신처가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퇴직급여 부족분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공무원 퇴직급여 부족분을 합산한 전체 충당 보전금 규모는 9조 5,099억 800만원임.⁸⁾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6,172,816	6,566,470	393,654	6.4
연금부담금	2,064,334	2,188,578	124,244	6.0
퇴직수당부담금	694,650	880,247	185,597	26.7
재해보상부담금	123,893	156,897	33,004	26.6
대여학자금부담금	169	176	7	4.1
보전금	3,289,770	3,340,572	50,802	1.5

8) '26년 보전금 9조 3,215억원에 '24년 정산액 1,884억원을 반영한 예산상 보전금

나. 일반 사업비 내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중 성질별로 보아 일반사업비로 분류되는 금액은 총 1,700억 9,600만원인데, 이는 2025년도에 비하여 9.7%에 해당하는 150억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계속사업의 구체적인 증·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내역(20% 이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주요 증액내역
			(B-A)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ODA)	33,345	44,223	10,878	32.6	·인건비 부족분 보존(+7,679백) 등
교육시설유지관리	3,088	4,212	1,124	36.4	·AI 교육장 구축 및 노트북 구매(+1,155백) 등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정보화)	-	1,187	1,187	100	·차세대국가인재DB 구축(신규)

[2026년도 주요 감액사업내역(20% 이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주요 감액내역
			(B-A)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2,609	1,601	△1,008	△38.6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3단계 완료(△1,491백) 등
전자인사관리시스 템운영(정보화)	13,284	7,487	△5,797	△43.6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2단 계 완료 및 3단계 구축(△5,729 백) 등

다. 성인지 예산안

2026년도 인사혁신처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 영향을 고려한 공직자 역량개발을 목표로 교육과정운영 사업이 37억 3,000만원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사혁신처 성인지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대상사업	'25년 예산(A)	'26년안 (B)	증 감	
				(B-A)	%
일반 회계	교육과정운영	3,930	3,730	△200	△5.1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	-	-	-
	직접목적사업 소계	-	-	-	-
	총 계	3,930	3,730	△200	△5.1

교육과정운영 세부사업은 공직자 대상 성평등 관련 교육을 통해 공직자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3. 공무원연금기금

(1) 수입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 편성 규모는 금년(33조 7,737억원) 대비 4.1%(1조 3,882억원) 증가한 35조 1,619억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기여금과 자치단체연금부담금인 연금수입에서 8,041억원, 직원 대부금 회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20억원 증액되었고, 임대주택 및 회관 임대수입 등 관유물 대여료에서 5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에서 744억원, 융자원금회수에서 47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 및 재산수입에서 394억원, 관유물매각수입에서 429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입대체경비수입에서 11억원이 감액되었음.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국가부담 보전금에서 508억원, 국가부담 부담금에서 4,012억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단위: 억원, %)

항 목	2025계획 (A)	2026계획(안) (B)	증 감		비 고
			(B-A)	%	
자체수입	231,365	239,016	7,651	3.3	-
- 연금수입	204,209	212,250	8,041	3.9	기여금, 지자체 부담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	20	순증	직원 대부금 회수
- 관유물대여료	6,762	6,757	△5	△0.1	임대주택 및 회관 등 임대 수입
- 채화및용역판매수입	2,066	1,322	△744	△36.0	주택 및 시설운영수입
- 용자원금회수	12,063	11,590	△473	△3.9	연금 및 학자금 대부
- 이자 및 재산수입	4,144	4,538	394	9.5	금융자산 및 연금대부이자수익
- 관유물매각수입	2,062	2,491	429	20.8	부동산 및 임대 주택 매각
- 수입대체경비수입	59	48	△11	△18.6	은퇴지원교육수입
정부내부수입	71,889	76,409	4,520	6.3	-
- 보전금	32,898	33,406	508	1.5	국가분 부담금
- 연금부담금	27,945	29,415	1,470	5.3	국가분 부담금
- 퇴직수당 부담금 등	11,046	13,588	2,542	23.0	국가분 부담금
금융자산 회수	34,483	36,194	1,711	5.0	채권·주식 등 회수
합 계	337,737	351,619	13,882	4.1	-

(2) 지출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출 편성 규모는 기금의 수입 편성 규모와 같은 35조 1,619억원으로 금년(33조 7,737억원) 대비 4.1%(1조 3,882억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연금사업에서 1조 7,839억원, 주택사업에서 423억원, 시설운영사업에서 36억원, 고객지원사업 및 금융자산운용경비에서 20억원, 회계기금간거래에서 544억이 증액된 반면, 대부사업에서 355억원, 금융자산 운용에서 4,646억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단위: 억원, %)

항 목	2025계획 (A)	2026계획안 (B)	증 감		비 고
			(B-A)	%	
사 업 비	281,799	299,762	17,963	6.4	-
- 연금사업	268,616	286,455	17,839	6.6	연금 및 재해보상급여
- 대부사업	8,384	8,029	△355	△4.2	연금 및 학자금 대부
- 주택사업	3,814	4,237	423	11.1	주택관리·임대주택건립
- 시설운영사업	838	874	36	4.3	지부시설·복지시설운영
- 고객지원사업	125	145	20	16.0	은퇴지원교육,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공무원 재해예방·재활사업
- 금융자산운용	22	22	-	-	자금운용 및 금융자산투자 경비
기금운영비	729	750	21	2.9	기금관리 운영비
- 인건비	553	577	24	4.3	인건비, 퇴직금
- 일반경비	175	173	△2	△1.1	관리운영비, 정보화경비 등
차입금상환	2	2	-	-	금융기관 단기 차입금 이자
회계기금간거래	657	1,201	544	82.8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국가분)
금융자산 운용	54,550	49,904	△4,646	△8.5	채권·주식·대체투자 등
합 계	337,737	351,619	13,882	4.1	-

(3) 공무원연금수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 개인 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률은 연차적으로 0.25% 인상되어 9.0%에 이르면서 기금의 수입은 늘고 같은 기간 퇴직급여에 물가인상률 적용이 유예되어 지출은 제한되었으나,

2021년부터 퇴직급여인상률이 적용되어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기여율과 부담률은 동일하여, 2026년 퇴직급여 수지차는 9조 3,214억 7,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금수지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목	'25년 계획(A)	'26년 계획안(B)	증감(B-A)
I. 수 입	14,918,762	15,634,764	716,002
○ 기여금	6,734,615	7,011,969	277,354
○ 연금부담금 등	8,125,229	8,505,948	380,719
○ 기금전입금	58,918	116,847	57,929
II. 지 출	23,598,568	24,956,239	1,357,671
○ 퇴직연금	22,854,884	24,322,262	1,467,378
○ 퇴직일시금 등	743,684	633,977	△109,707
III. 수지차	8,679,806	9,321,475	641,669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 출>

1. 국가시험시행(1631-30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에 따라 7급 공채 추가 실시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에 반영되지 못 한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노동자 안전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소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시험시행 사업은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 관리를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개최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400만원이 감액된 133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가시험시행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시험시행	13,848	13,818	13,324	△494	△3.6
국가시험운영	13,151	13,286	12,713	△573	△4.3
국가시험 시스템관리	171	38	50	12	31.6
공직박람회 개최	150	150	150	-	-
시험관리 부대비용	304	270	330	60	22.2
상용근로자 인건비	72	74	81	7	9.5

나. 근로감독관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예산 추가반영 필요

□ 현재 ‘근로감독관 확대’ 대통령 지시(2025.6.5., 국무회의)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추진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 및 건설업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⁹⁾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임.¹⁰⁾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 (사고사망만인율) ‘23년 0.39‰, ‘24년 0.39‰

↳ 주요 국가 사고사망만인율(‘23년): 일본 0.12, 독일 0.11, 미국 0.35, 영국 0.03

□ 고용노동부는 증원 계획 중인 근로감독관 2,000명 중 수시 직제로 300명을 증원하였고(2025.8.26. 시행), 2025년 하반기에는 700명, 2026년에는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증원되는 인원 중 500명(행정 200, 과학기술 300)을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직 7급 공채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9)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1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9.17.

- 해당 공채를 통하여 과학기술직군(기계·전기·화공·토목·시설) 300명, 행정직군(일반행정·고용노동)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1차시험('25.11.15.), 2차시험('26.1.24.), 3차시험('26.3.5.~6.)을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은 2026년 4월에 고용노동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급 선발 계획》

□ 선발직군 및 인원

과학기술직군(300명)					행정직군(200명)	
공업 (기계)	공업 (전기)	공업 (화공)	시설 (토목)	시설 (건축)	행정 (일반행정)	행정 (고용노동)
64	62	52	67	55	100	100

□ 선발 일정

시험 공고	원서 접수	1차시험 (PSAT)	2차시험 (전문과목)	3차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부처 배치
'25.9.10.	'25.9.15.~19.	'26.11.15.	'26.1.24.	'26.3.5.~6.	'26.3월말	'26.4월말

* 근로감독관 채용 원서접수 인원 : 12,290명

자료: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는 해당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20억원(1차 시험: 8억 7,000만원, 2차시험 9억 9,400만원, 3차시험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는 해당 7급 공채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소요예산(안)》

(단위:천 원)

구분 (예산과목)	소요예산				
	1차 (‘25.11.15.)	2차 (‘26.1.24.)	3차 (‘26.3.5.~6.)	’26년 소계 (2차+3차)	합계
총 계	876,745	693,839	439,082	1,132,921	2,009,666
집행 계	353,400	128,772	260,700	389,472	742,872
일용임금(110-04)	27,000	8,710	4,620	13,330	40,330
일반수용비(210-01)	25,500	30,520	38,580	69,100	94,600
임차료(210-07)	46,200	27,132	148,500	175,632	221,832
관리용역비(210-15)	-	-	15,000	15,000	15,000
기타운영비(210-16)	233,200	52,120	16,000	68,120	301,320
국내여비(220-01)	21,500	10,290	38,000	48,290	69,790
출제 계	523,345	565,067	178,382	743,449	1,266,794
일용임금(110-04)	46,510	55,902	14,070	69,972	116,482
일반수용비(210-01)	91,000	66,000	9,800	75,800	166,800
급식비(210-04)	29,720	34,200	5,580	39,780	69,500
임차료(210-07)	4,450	14,330	1,800	16,130	20,580
일반용역비(210-14)	37,415	34,000	14,270	48,270	85,685
기타운영비(210-16)	304,200	342,095	117,745	459,840	764,040
국내여비(220-01)	10,050	18,540	15,117	33,657	43,707

자료: 인사혁신처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관 충원을 위한 7급 공채 추진 방침이 올해 9월 초에 결정되어¹¹⁾ 시기적으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당 소요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며,

11) 2025년도 하반기 고용노동부 충원 계획 제출(‘25. 9. 3.)

1차시험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인사혁신처 및 고용노동부 소관의
기정 예산을 활용하여 소요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나, 2차시험 및
3차시험 실시에 필요한 예산 11억 3,300만원은 국회의 예산안 심
사 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 확대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
로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결
정 과정과 추진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서 반영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임.

□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노동자 안전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소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1849-304)

-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사업은 공무원의 복무제도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역사업으로는 복무 및 징계 운영 사업과 공직윤리위원회운영 사업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5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490	509	529	20	3.9
복무 및 징계운영	194	210	215	5	2.4
공직윤리위원회운영	299	299	314	15	5.0

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노력 필요

- 공직윤리위원회운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안건 검토 및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임.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4급 이상)에게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¹²⁾

1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일정한 수탁자에게 백지신탁할 경우, 보관신탁과는 달리 수탁자는 그 주식을 매각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의 원소유자인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정보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다만, 해당 주식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9.12.3.>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개요》

□ 제도 취지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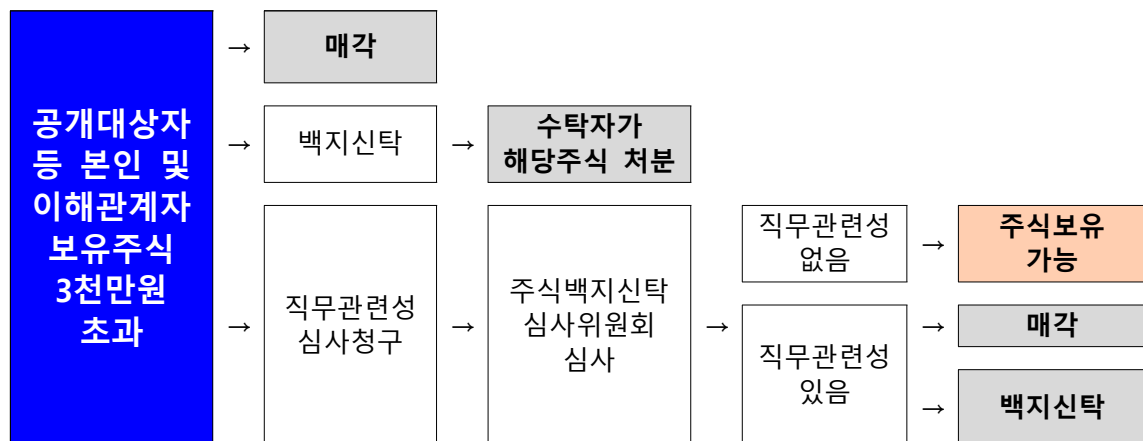
□ 대상 및 요건

-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

□ 업무처리 절차



자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사적 이익이 공적 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공직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제도 운영의 취지가 있음.

□ 다만, 공직자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수탁기관의 자산 운용 불이익이 공직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 규모의 주식
을 보유한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¹³⁾

현행 법령에서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심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임.¹⁴⁾

□ 특히,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주식백지
신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던바,

직무관련성 판단기준¹⁵⁾과 관련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높아

13) 동아일보, 「[단독] 보유주식 파느니 공직 포기… 올해만 506건 직무관련성 심사」, 2024년 10월 25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25/130290635/2>.

1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1항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용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이 조항도 심사기준의 구체화를 전제한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에서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을 뿐 심사기준의 구체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추상적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도 직무관련성이 부인된 예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종에 대한 시험 및
평가에 관여하는 직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장영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과 백지신탁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고려법학」 제7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9, pp. 348, 각주

1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
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
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
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명확성·일관성 및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 영입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임 중 주식 접근은 차단하되 퇴임 후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관신탁제도 도입 등 대안 검토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음.

-
-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러한 점에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934-531)

- 신설되는 주니어 직위가 국익 반영이라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취지에 맞추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사업은 국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제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8억 7,800만원이 증액된 44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ODA)	32,434	33,345	44,223	10,878	32.6
국제부담금 지급	32,403	33,313	44,191	10,878	32.7
운영경비	32	32	32	-	-

나. 국제기구 주니어 직위에 대한 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확인 필요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은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의 수는 확대되어¹⁶⁾ 2025년도 기준 135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7개 직위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새 정부는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¹⁷⁾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공직 활력 제고방안」(2025.7.)을 마련하였으며, 청년 공무원의 직무몰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년세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실무급 직위(가칭, 주니어 직위)를 신설·운영할 예정임.

16) ('22)120개 → ('23)130개 → ('25)135개 →('26예산안)142개

17)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7.31.) '국민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공직 활력 제도 정비 본격화, 인사혁신처누리집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29&mode=view&cntId=4096&category=&pageIdx=5)

《「공직 활력 제고방안」(2025.7.) 내 주니어 직위 관련 내용 발췌》

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처우개선

○ **(청년 대상 고용휴직 확대)** 청년 공무원의 직무몰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년 공무원 특화 고용휴직 확대

-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제기구 주니어 고용휴직(OECD) 신설

자료: 인사혁신처

□ 현행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국·과장급 공무원이 근무 가능한 직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위 직급이나 저연차 공무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데,

2026년도에 신설 예정인 주니어 직위는 청년세대 중양부처 공무원(자격요건은 4~9급 경력직공무원, 만 39세 이하, 근무경력 5년~10년으로 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실무급 직위(가칭, 주니어 직위)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의하여 경제, 사회, 과학 등 7개 분야에서 추진될 예정임.

□ 주니어 직위 신설은 기존 직위(시니어 직위)와 구분된 이원적 체계로 운영하여 청년세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청년세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 몰입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OECD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성과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UN 등 타 국제기구로 확대·추진될 예정으로,

해당 7개 직위에 대해 6개월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7억 3,200만원(주니어 7개 직위×2억 900만원¹⁸⁾×0.5년)이 편성되어 있음.

《국제기구고용휴직 기존 직위와 주니어 직위 비교》

구분	기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국제기구 주니어 직위('26년 신설)
직위수	135개	7개
직급(OECD)	PAL 7 (P4~5)	PAL 4~6 (P3)
휴직기간	통상 3년 근무(최대 5년)	2년 근무(+1년 연장 가능)
선발절차	선발공고 → 부처추천 → 심의 → 국제기구 추천 → 국제기구 면접 → 휴직발령	
성과관리	매년 휴직 연장 및 휴직자 교체 시 업무실적, 국제기구 성과평가* 결과 등 점검	

※ OECD 직위 비교 및 분야별 현황

UN	OECD	전문가 직위 주요역할
P5	PAL8	최소 10년 관련 경력을 갖춘 선임과장급 직위 부서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와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
P4	PAL7	최소 7년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과장급 직위 팀이나 부서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며, 전략 계획 수립에 참여

자료: 인사혁신처

□ 주니어 직위 신설은 청년세대 공무원에게 국제기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과 국제 감각을 배양하고,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 고위직 진출 확대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육성을 위해 초급단계부터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 공무원의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정책 추진으로 보임.

18) 기존 시니어 직위 단가(2억 5,300만원)에 OECD 관리직급(PAL7)과 실무직급(PAL6) 간의 기본 급여 차이(약 82% 수준)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주니어 직위에 해당하는 OECD의 PAL 4~6(UN P3급) 직위는 2~5년의 관련 경력을 갖춘 실무직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기존 직위와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견 공무원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및 공무원의 경력 개발 등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전략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현재 국외장기훈련 등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할 의무(6년의 범위, 위반 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를 부여하여 인력 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¹⁹⁾ 국제

19)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
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기구고용휴직자에게는 휴직기간(통상적으로 2~3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할 의무를 부여하되,²⁰⁾ 경비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복무의무가 해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구속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니어 직위 근무 후 해당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주니어 직위 고용휴직 공무원이 휴직 복귀 후 이탈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능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신설되는 주니어 직위가 청년세대 공무원에 대한 기회 제공과 동시에 국익 반영이라는 국제기구고용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입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1943-302)

- 동 사업은 현행 시스템의 인프라 교체, 보안 강화, AI 기반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핵심 정보화 사업인 만큼, 인사혁신처는 사업의 전체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2차년도 시스템 구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가. 개 요

□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사업은 현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2개년에 걸쳐 새로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억 8,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음.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 베이스(정보화)	-	-	1,187	1,187	순증

나.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업의 면밀한 일정 관리 필요

- 동 사업은 범국가적 공정채용 지원 및 과학적 인재정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2026년 예산안에 11억 8,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부처에 인사수요가 발생하거나 정무직 등 국가 주요직위 인선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된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으로서,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면허, 상훈, 저서, 논문 등 주요 직위 인재추천에 필요한 객관적인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요》

□ 목적

-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무직 등 국가 주요직위 인선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을 도모

□ 추천직위

- 정무직(선거직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 책임운영기관장
- 공공기관장 및 임원
- 정부위원회 위원
- 각급기관 시험위원
- 각종 선발심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수록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위원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 중견기업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경영인
- 주요 협회, 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대한민국 명장·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기능한국인
-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입상자 및 훈포상 수여자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
-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수록정보

- 학력, 경력, 자격면허, 상훈, 저서, 논문 등 주요 직위 인재추천에 필요한 객관적인 인물정보 자료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1999년에 구축된 이후 1차 개편('06.11.~'07.03.), 2차 개편('16.04.~'16.12.)을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HW와 검색엔진을 포함한 SW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전면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지난 10년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통한 인재추천 사용빈도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가인재DB 활용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공공기관('20년), 지방공기업('24년), 지방출연기관('26년 예정)]되는 등 시스템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용 현황》

□ 연간 인재추천 사용 빈도(10년간 약 3.1배 추천인원 증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598	11,686	789	21,099	652	15,228	966	26,651	845	22,086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1,006	29,632	966	30,548	972	29,000	900	28,020	921	35,775

□ 연간 직접검색 사용 빈도(10년간 약 3.9배 추천인원 증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324	9,504	149	4,090	209	8,422	305	11,205	485	18,374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활용건수	추천인원
553	16,548	677	22,902	913	30,877	993	33,159	1,140	37,247

자료: 인사혁신처

-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²¹⁾
-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사업은 이와 같은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 검색 편의성 증진, 보안 강화, DB관리체계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부터 2개년 동안 진행될 예정임.
-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ISP 수립 사업은 2024년도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총 6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년(2026년~2027년)에 걸쳐 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ISP 수립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4.5.14.~ 2024.9.11.(약4개월) / 118,300,000원
- 수행업체 : (주)지티아이씨
- 주요내용 : 현황분석 ⇒ 목표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 1차년도(2026년, 11억 8,700만원)에는 국민추천제 시스템 개선, DB 재설계 및 분류체계 정립, 국가인재DB 구축(분석·설계)을 중점적으로

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10. 15. 접속,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1834>.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2027년, 50억 5,300만원)에는 국가인재DB 구축(구현·테스트), 빅데이터 기반 AI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요예산 및 추진 일정》

□ 소요예산 : 총 6,240백만원

(단위: 백만원)

이행과제	과제내용	구 분	2026년	2027년	합 계
#1	국가인재DB 구축	개발비	670	2,428	3,098
		상용SW	-	269	269
		소 계	670	2,697	3,367
#2	DB재설계 및 분류체계 정립	개발비	517	-	517
		상용SW	-	-	-
		소 계	517	-	517
#3	빅데이터 기반 AI시스템 구축	개발비	-	1,851	1,851
		상용SW	-	505	505
		소 계	-	2,356	2,356
총 합계			1,187	5,053	6,240

□ 추진 일정



자료: 인사혁신처

-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는 인물정보 검색과 정보 제공 방식, 그리고 국민추천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보안관리 체계 강화, 데이터 관리체계 및 인프라 재설계 등을 통하여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계획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주요 개선 내용》

[대외] 사용자 편의성 개선	
개선1	인물정보 검색 편의성 개선 ① 개인별 검색조건 설정 등 사용자 맞춤형 검색 기능으로 검색 편의 제고 +AI 문장형·대화형 검색으로 처음 이용자도 쉬운 검색 ② 미래·융복합 분야 반영 등 전문분야 분류체계 재설계/주요 기관, 직위 등에 대한 '코드화'를 통해 인물검색 정확성 확보 +AI 인물정보 분석을 통한 전문분야 자동 추천
	정보제공 방식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① 공무원의 불필요 임용내역 제거 등 핵심경력 관리로 인물정보 활용성 ↑ * 처→국·과 등 임용단계 생략/ 휴직교육 등 비직무 분리/ 핵심경력 제공 후 필요시 전체정보 활용 +AI 생성형AI를 통한 인물정보 요약보고서 자동생성 제공
개선3	국민추천제 시스템 개선 (*공약이행 과제) ① (대외) 독립된 시스템 구축(현재 국가인재DB 인프라 공동사용), 사용자중심의 참여형 UI/UX 구성, PC·태블릿·모바일 등 접근성 개선, 영문 홈페이지 구현, 개방형직위 등 시스템 연계 ② (내부) 국민추천 결과 자료 자동화 등 관리 효율화, 추천인재 각 부처 상시활용, 통계 자동화 및 시각화(대시보드)
[내부] 관리 효율화	
개선1	보안관리 체계 강화 ① 개인정보 처리 이상행위 탐지·차단 SW 도입 - 비정상적 대량 다운로드 등 기준 설정 → 탐지 시 자동 차단 및 소명 요구 → 정상여부 판단 ② 문서보안(DRM), 내·외부망 보안 설계기준 등 최신화 도입
개선2	데이터 관리체계 및 인프라 재설계 ① SW·HW 전면 교체 등 최신버전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성능·효율성 ↑ ※ 검색엔진 등 최신버전 적용, 전체 HW(서버) 클라우드 적용 등 ※ 현재 (여가부)여성인재DB·(국조실)청년인재DB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리(이관) 검토 필요 ② MOU등 다양한 인물 연계 데이터의 표준체계 마련으로 자동 현행화 ※ 기관별 상이한 정보 구성(레이아웃) → 표준 포맷 처리 → DB 자동 현행화

자료: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 개선된 인물정보 검색 기능과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체계를 바탕으로 정부인사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단순반복업무 자동화와 불필요한 업무를 제외함으로써 연간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67만 시간(비용 약 13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전면 교체, 국가 인재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최신 보안 기준 적용과 AI 기반 검색 도입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정보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는 향후 2년간 총 62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전체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2차년도 시스템 구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2044-303)

-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연계하여 동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 공무원 예술대전, 전직지원 컨설팅, 민관보수수준 실태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00만원이 감액된 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735	770	706	△64	△8.3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266	269	226	△43	△16.0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253	260	180	△80	△30.8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180	200	300	100	50.0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37	41	-	△41	순감

나.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 2026년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 예산안은 7억 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7억 7,000만원 대비 6,400만원(8.3%)이 감액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별로는 공무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컨설팅 운영’은 확대된 반면,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예산이 4,300만원,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예산이 8,000만원,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예산 4,100만원(전액)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와 효과성을 고려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증감 내역》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세부 내역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동호인대회 종목 축소(△27백), 후생복지봉사단 종료(△16백)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공무원 음악제 폐지(△80백)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전직지원컨설팅 확대 운영(+100백)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전액 삭감 (△41백만원)

*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연구개발(7032-300) 등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자료: 인사혁신처

-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퇴직 예정 공무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감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내역사업별 예산 추이》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342	234	269	269	226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271	271	260	260	180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186	200	200	200	300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41	41	41	41	-

자료: 인사혁신처

- 이같은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재배분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삭감은 공직사회의 활력 저하, 유능한 인재에 대한 유인 감소 등 조직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고가 필요해 보임.
- 최근 낮은 보수,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에서 직업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채 경쟁률 및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 수 추이》

□ 인사혁신처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추이(2021~2025년)

- 5급 공채: (‘21)43.5:1→(‘22)37.9:1→(‘23)35.6:1→(‘24)35.0:1→(‘25)34.4:1
- 7급 공채: (‘21)47.8:1→(‘22)42.7:1→(‘23)40.4:1→(‘24)40.6:1→(‘25)44.6:1
- 9급 공채: (‘21)35.0:1→(‘22)29.2:1→(‘23)22.8:1→(‘24)21.8:1→(‘25)24.3:1

□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수 추이(공무원연금 통계 기준)(2020~2024년)

- (‘19)6,500→(‘20)9,009→(‘21)10,426→(‘22)13,032→(‘23)13,568→(‘24)12,013

자료: 인사혁신처

□ 정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과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대 폭인 3.5% 인상하여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문화·체육활동의 지원이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취향 기반 소모임 앱²²⁾의 이용 증가와 자신의 취미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즐기려는 ‘디깅(Digging)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보수 인상 외에 직장에서의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공직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2) ‘문토’, ‘소모임’, ‘당근(모임)’ 등

□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연계하여 동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6.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2044-306)

- 인사혁신처는 신속하고 내실있는 재해보상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위원회 개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위원수당의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사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의 운영 및 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으로, 내역사업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2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2,206	2,591	2,813	222	8.6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568	638	670	32	4.8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등	207	207	227	20	8.8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1,431	1,645	1,815	170	9.4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	101	101	0	0.0

나. 신속하고 내실있는 재해보상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운영은 재해보상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경비를 반영하고 있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요》

□ 심의회 개요

- (근 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
- (설 치) 2018. 9. 21.
- (주요기능) ①공무상 요양,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급여결정②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③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 심의
- (구성인원)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공무원재해보상법 §7 ①)
※ 풀(pool)제로 운영되며, '25.8월 기준 위원 총 88명

구 분	내 용
위원장	전문성과 연륜 등을 고려하여 회차별 매회 위촉
당연직위원(5명)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부 및 인사처의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위원(83명)	의료인, 법조인,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관련 전현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

- (임 기) 3년(연임 2회까지 가능) ※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 회의운영

구 분	내 용	비 고
회의개최	매회 11~15명으로 구성	상정 안건 및 위원 일정에 따라 매번 참석 위원 변경
의결정족수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최빈도	(전자심의) 매주 월 (출석심의) 매주 수, 격주 목	변경가능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요》

□ 심의회 개요

- (근 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및 제53조
- (설 치) 2018. 9. 21.
- (주요기능) ①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②연금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등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③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
- (구성인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공무원재해보상법 §53 ①)
※ 풀(pool)제로 운영되며, '25.8월 기준, 위원 총 35명

구 분	내 용
위원장	전문성과 연륜 등을 고려하여 회차별 매회 위촉
당연직위원(5명)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부 및 인사처의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위원(30명)	의료인, 법조인,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관련 전현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

- (임 기) 3년(연임 2회까지 가능) ※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 회의운영

구 분	내 용	비 고
회의개최	위원장이 회의소집, 매회 11~15명으로 구성	상정 안건 및 위원 일정에 따라 매번 참석 위원 변경
의결정족수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최빈도	매월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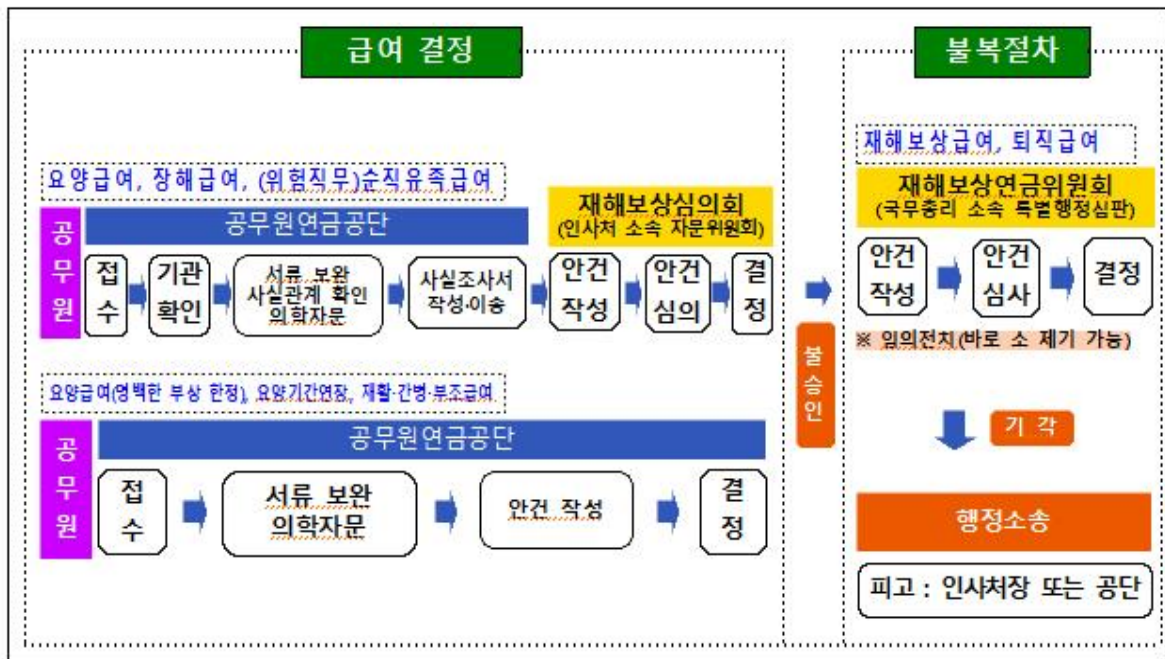
자료: 인사혁신처

- 공무원인 청구인이 청구서·진단서 등 자료를 갖춰 소속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연금취급기관은 경위조사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 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청서·경위조사서·진단서 등 필수서류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하면 인사혁신처는 해당 안건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짐.

- 해당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재해보상 급여처리 흐름도》



자료: 인사혁신처

- 최근 재해보상 청구의 증가로 심의회의 처리 건수와 위원 당 평균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기전이 복잡해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운 질병(정신질환, 악성종양 등)이나 경위 파악이 어려운 자살 등과 관련된 사안의 비율도 높아져 심의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재해보상 처리 지연 및 미처리 이월 건수의 증가 등으로 심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현황 및 지급 수당》

(단위 : 회, 건,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회의 개최 횟수		105	113	107	109	105
회별 평균 참석 위원수		10.0명	10.1명	10.0명	10.0명	10.5명
처리 건수*		7,759	6,995	7,319	9,150	10,565
	요양급여 질병	1,132	1,117	1,198	1,142	1,489
	정신질환	228	258	335	393	578
	악성종양	75	68	80	77	111
	자살순직	19	26	49	31	40
	장해급여	263	284	295	378	421
위원당 처리 평균 건수**		7.4	6.1	6.8	8.3	9.6
처리 기간		69일	75일	68일	72일	79일
위원 수당 지출		240,123	278,115	270,062	279,939	296,914
* 공무상 요양, 재요양·추가상병, 장해급여, 장해재판정, 순직유족급여를 모두 합한 수 ** 처리 건수를 연간 참여 인원으로 단순 평균한 값으로, 다수 안건의 경우 복합상병(2개 이상의 상병) 및 법률 쟁점이 있는 안건으로 1인당 평균 검토 안건은 위의 건수를 상회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처리 및 미처리 이월 건수》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접수(a)	6,925	6,547	7,375	9,714	9,484
전년 이월(b)	1,677	1,121	1,130	1,650	2,135
처리(c)	7,481	6,538	6,855	8,689	9,892
미처리 이월(a+b-c)	1,121	1,130	1,650	2,135	1,727

* 공무상 요양,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기준 청구

자료: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 재심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재해보상 재심을 처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도 처리 기간과 미처리 이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처리 및 미처리 이월 건수》

(단위 : 건,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접수(a)	664	682	647	788	1,076
전년 이월(b)	143	241	297	355	473
처리(c)	566	626	589	670	682
미처리 이월 (a+b-c)	241	297	355	473	867
회의 개최 횟수	11회	10회	10회	11회	11회
처리 기간	94일	145일	186일	188일	247일

* 재해보상급여(요양, 장애, 순직 등) 및 연금급여 안건 전체

자료: 인사혁신처

- 현재 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수당 단가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다른 위원회 수당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재해보상 심사 건수 및 난이도 상승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해보상 심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 수당의 현실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³⁾

23) 현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등의 위원 수당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18년 이후 동결된 금액임. 반면, 대법원은 2025년 낮은 감정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체 및 진료 기록 감정비용을 2배 인상함.(신체감정 최저 40만원에서 80만원, 진료기록감정 최저 60만원에서 120만원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인사혁신처 소관 위원회별 회차당 위원수당 예산 현황》

구분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 보상연금위	중앙징계 위원회	공직자윤리 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계	35만원	40만원	60만원	55만원	45만원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검토수당	20만원	25만원	45만원	40만원	30만원

자료: 인사혁신처

-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해보상 심사 건수의 증가에 따른 심의위원의 업무 증가 및 낮은 수당, 처리 기간의 지연, 전문가 및 객관적인 데이터 필요성 등 재해보상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으며,
- 최근 재해보상 청구 건수의 증가와 함께 심사 결과에 불복한 소송 제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²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의 내실화 및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추가적인 위원회 개최,²⁵⁾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위원수당의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24) <최근 5년간 재해보상 관련 소송 건수>

: ('20)145건 → ('21)204건 → ('22)260건 → ('23)273건 → ('24)298건

25)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경우에는 현재에도 100회를 상회하는 심의회가 개최되고 있어 인력이나 예산의 증가없이 회의 개최 수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재심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인력 증원 계획 없이 26년도에 7회 추가 운영 예산만(정부안) 반영된 상태임.

7.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7031-500)

- 정보화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집중식 정보화시스템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인사혁신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사무기기, 업무포털,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31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3,027	3,122	3,139	17	0.5
정보화기반 운영	2,667	2,754	2,771	17	0.6
정보시스템 운영	360	368	368	0	0.0

나. 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시스템 점점 등 필요

□ 동 사업은 인사혁신처 내 정보시스템, 업무시스템 및 인터넷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사이버침해 및 장애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업무포털과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장려라는 국가 정보화 정책 기조²⁶⁾와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행안부 예규)」²⁷⁾에 따라 전 직원이 개인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 모든 업무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환경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의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2025.9.26.)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업무용 자료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²⁸⁾에 저장된 데이터가 소실된 바 있음.

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7)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행안부 예규)」 제4조(기본원칙) 이용기관은 G드라이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않고 G드라이브에 저장하여야 한다. (하략)

28) G-드라이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는 정보 접근과 업무의 처리, 공유·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 보안 강화, 업무용 자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부 공통 클라우드 저장소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G-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는 각 부서별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보관해 온 제도 개선검토 자료, 각종 심사자료, 통계자료 및 인사정책의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자료 등으로

현재 온나라 등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주요 자료는 대부분 복구되었으나²⁹⁾, G드라이브에 저장된 실무 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자료가 대부분 소실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 클라우드저장소를 전면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가 타 기관에 비하여 큰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번 사례는 중앙 집중식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개별 기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봄.

□ 정보화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 물리적 재난, 대형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 집중식 정보화시스템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29) 공무원 임용·보수 등 인사운영 관련 인사기록 데이터가 저장된 e사람 시스템 및 국가인재DB 등은 광주센터에 소재하여 화재 영향이 없었음.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8. 대여학자금융자(3141-321)

- 동 사업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을 통한 공무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00억원이 감액된 2,37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346,551	267,900	237,900	△30,000	△11.2

나. 대여학자금융자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 대여학자금융자는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³⁰⁾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융자사업 중의 하나로,

30)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 두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⑦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금액·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동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은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년에서 4년 이내에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300억원이 감액된 2,37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 공단에서는 대여학자금수요를 감안하여 3,384억 3,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300억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대여학자금융자 운영 현황(2025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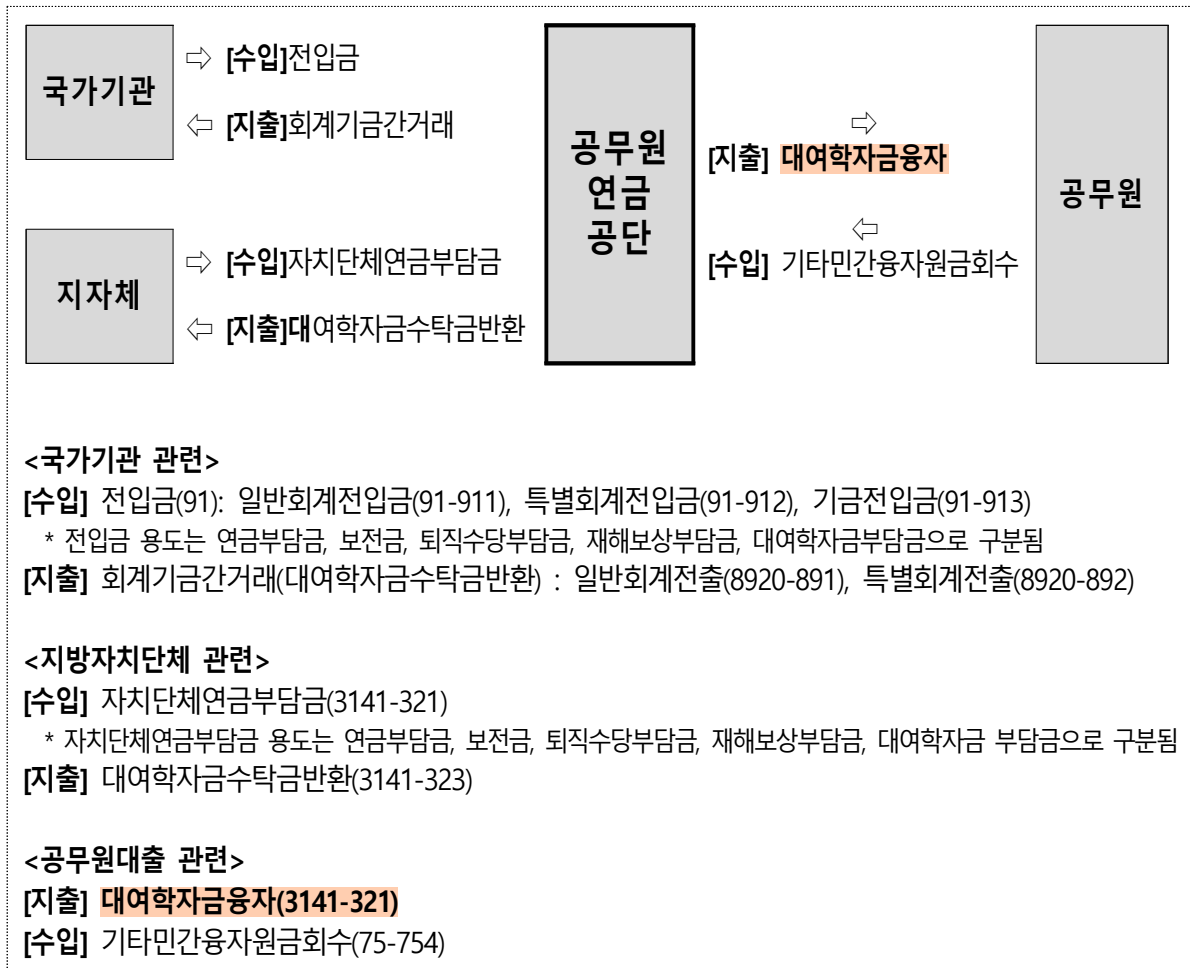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역		
대부규모	○ 연 2,679억원 규모		
대부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 공무원 배우자 제외		
대부조건	구분	국내대학	해외대학
	대부금액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액	연 \$10,000이내에서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액 ※ 정규학년 등록금만 대부 가능 ※ 4년제는 총 \$40,000, 6년제는 총 \$60,000 가능
		※ 실등록금 : 등록금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신청횟수	학기별 신청(연 2회)→총 12회	횟수제한 없음
	대부제외	대학원, 직업훈련기관, 계절학기 수강, 어학연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이 아닌 교육비	비학위과정(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
대부이율	○ 무이자(「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 ³¹⁾)		
대부한도	○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대부 가능 ※ 예상 퇴직금 초과 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인증서 필요) ※ 불가피한 경우 해외 대학은 수기 신청도 가능		
대부금 지급 및 상환	○ 대부 심사 후 본인 계좌로 3일 이내 입금 ○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 ※ 관련 법령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		
상환방법	○ (재직자) 보수에서 원천공제 ※ 보수 미지급 휴직자는 복직 후 보수에서 원천공제 가능 ※ 2자녀 이상 공무원은 학자금 상환 유예 ○ (퇴직자) 퇴직급여(공제일시금, 퇴직수당)에서 미상환 잔액 일시 공제 또는 연금월액 분할 상환 ○ (재임용) 재직자로 고지 전환하되, 퇴직 시 결정한 연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보수에서 원천공제 ○ 상환 연체 시 연체료 부과		

자료: 인사혁신처

3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학자금 대여 관련 예산 흐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그런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대여학자금용자 사업의 계획액은 2021년 4,146억원에서 2025년 2,6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왔으나, 집행액은 3,400억원에서 3,800억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23년부터는 부족분 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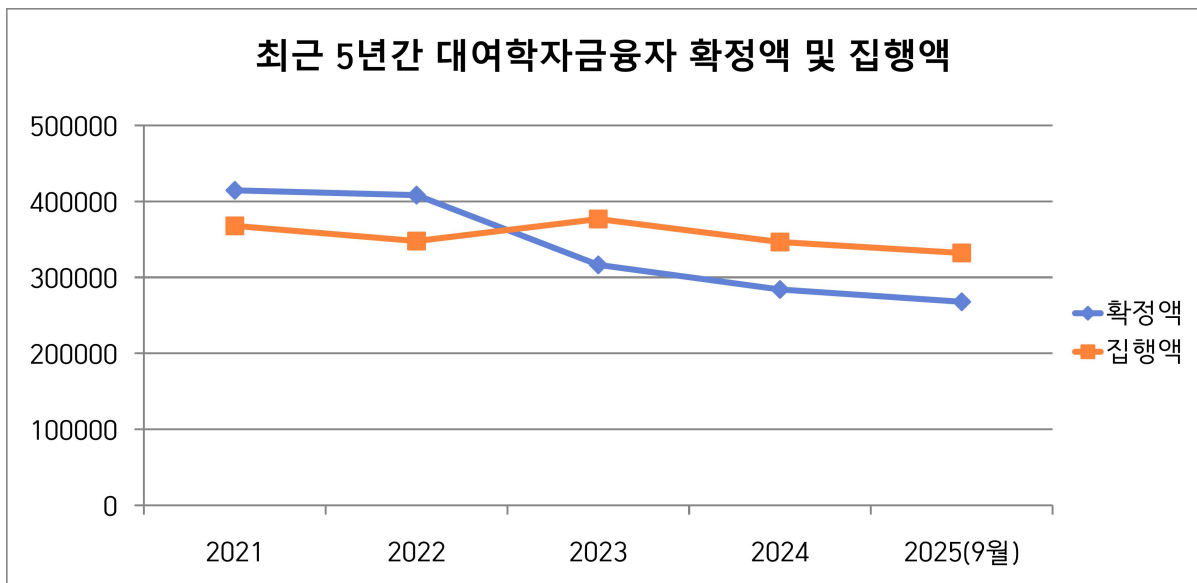
《최근 5개년간 대여학자금 실수요 대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요구	심의.확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확정액	삭감액	증감	최종			
2021	420,906	414,565	△6,341	△45,600	368,965	367,798	99.7%	1,167
2022	408,258	408,258	-	△60,000	348,258	347,847	99.9%	411
2023	354,646	316,491	△38,155	78,719	395,210	376,801	95.3%	18,409
2024	394,649	284,065	△110,584	70,164	354,229	346,551	97.8%	7,678
2025.9월(*)	350,206	267,900	△82,306	74,580	342,480	332,672	97.1%	-

* 계획대비 건수 및 단가 증가로 대여학자금용자 예산 부족으로 자체변경(25.6.2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장학금 확대 정책 등으로 향후 대여학자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집행액 추이를 고려해 볼 때 학자금 대여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계획안이 300억원 감액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예년의 사례를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조정되는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예산 및 기금계획은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과소편성한 후 집행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증액하는 방식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9.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 수탁금 잉여금이 과도하게 유보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사업은 대여학자금 회수액이 대여액을 초과하여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잉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 대여학자금 수탁금³²⁾을 반환하는 것으로,
-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5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82,498	40,500	50,000	9,500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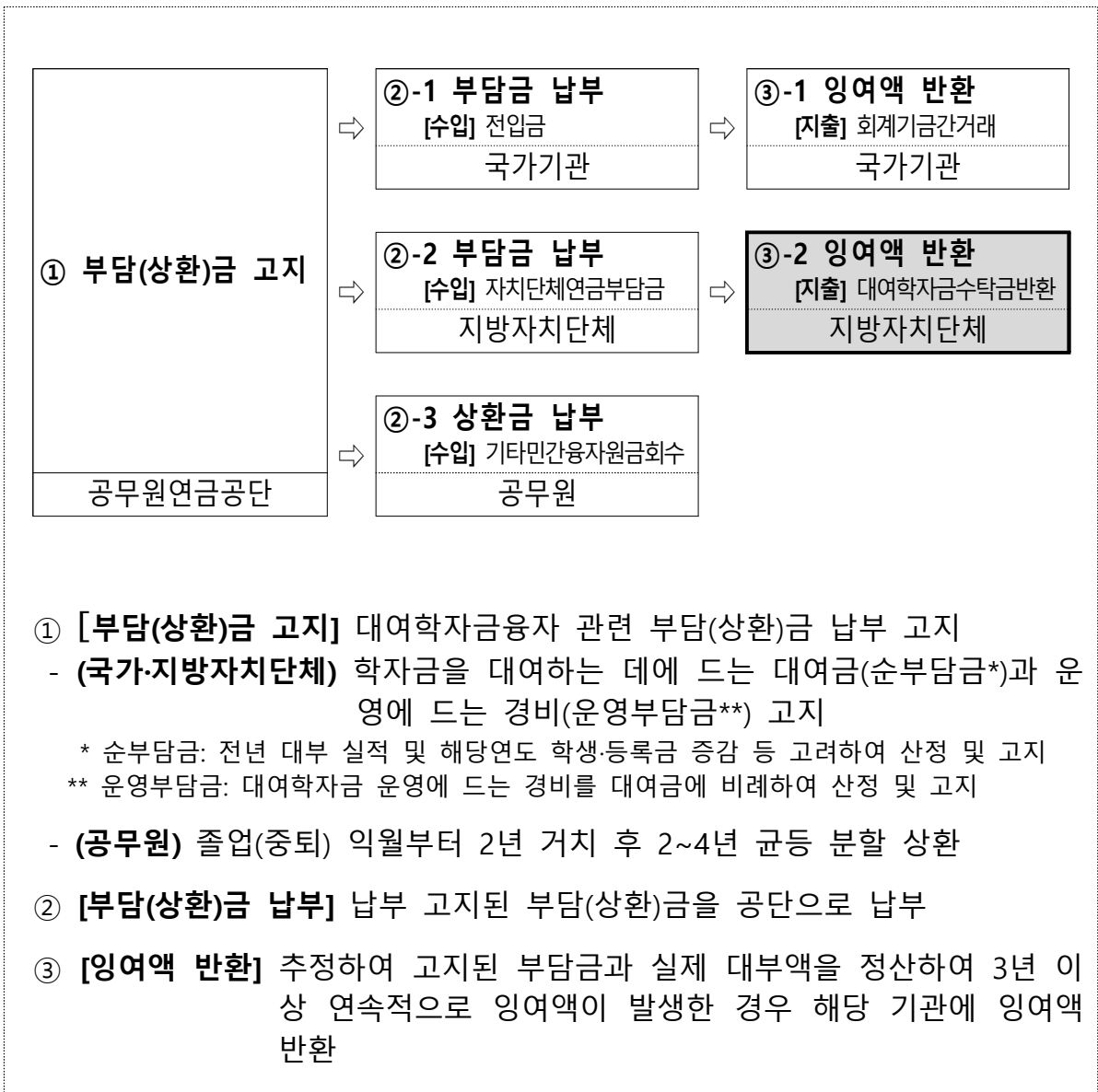
32)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에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나.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규모 확대 필요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부가 이루어진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하여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액을 반환하는 사업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전입금:수입)와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연금부담금:지출)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 대여(대여학자금 융자:지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부터 학자금이 상환(기타민간융자지원금회수:수입)된 경우,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가기관(회계기금간거래:지출) 및 지방자치단체(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지출)에 각각 반환하고 있음.

《대여학자금용자 부담(상환) 절차》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학자금수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반환금액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환액이 대부액을 3년 이상 연속하여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을 반환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2026년도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금액을 4,851억 8,300만원으로 산정하여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기금운용 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500억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음.

《수탁금 잉여액 반환 기준》

구분	주요내용
반환대상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액이 발생한 기관
반환금액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음.
반환시기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매년 6월 중)

자료: 인사혁신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2026년 지자체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요구액(485,183백만원)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24년 부담금 정산액 (A)	'25년 대부 예상액 (B)	'25년 수탁금 반환액 (C)	잉여 발생액 (D=A-B-C)	'25년 상환 예상액의 25% (E)	잉여 반환금 (F=D+E)
611,602	166,362	40,492	404,748	80,435	485,18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에서는 2022년도 국회 시정요구³³⁾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2025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반환 규모가 4,852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확정된 예산액은 500억원에 불과하여 유보하고 있는 수탁금 잉여금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도한 수탁금 잉여액 해소를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수탁금 반환액 및 예산확정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수탁금 반환 예정액	1,580	2,595	2,326	1,650	4,062	4,852
수탁금 반환 확정액	1,580	1,595	1,304	825	405	500
수탁금 잉여금	6,073	6,012	5,851	6,090	6,755	7,807

* 수탁금 반환 예정액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액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33)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도한 수탁금 잉여금 해소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게 변경되었음.

- 따라서, 수탁금 잉여금이 과도하게 유보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 주택사업관리(3151-333)

-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금이 과소 편성되어 있어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택사업관리 사업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원활한 반환 및 임대주택의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56억 800만원이 감액된 3,425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주택사업관리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B-A)	%
주택사업관리	421,788	358,141	342,533	△15,608	△4.4

나.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주택임대보증금 편성 필요

- 주택사업관리 예산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주택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주택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주택사업관리 사업 계획안 내역》

내역	비목	세부용도
주택임대보증금	반환금및손실금 (710-03)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운영경비	일반수용비 (210-01)	부동산관리비, 지급수수료 소송비, 분양주택판매비, 영업비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세금공과,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시설유지비, 분양주택관리사업비
	일반용역비 (210-14)	세종시 뉴홈 사전타당성 조사, 모바일 하자관리 서비스 도입
	무형자산 (440-00)	관리비에치금, 임차보증금

자료: 인사혁신처

- 2026년도 계획안에서는 주택임대보증금이 3,285억 5,500만원에서 3,085억 5,500만원으로 200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신축단지·신규매입·매각단지를 제외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주택의 세대수가 감소(2,589→2,402세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데 기인한 것임.

《2025년도 및 2026년도 주택임대보증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정상운영: 2,589세대×111백	287,347	정상운영: 2,402세대×111백	266,665
신축단지: 71세대×360백	25,568	신축단지: 111세대×365백	40,496
신규매입: 28세대× 63백	1,764	신규매입: 19세대× 63백	1,199
별내분양: 124세대×111백	13,876	매각단지 : 5세대× 39백	195
합계	328,555	합계	308,555

자료: 인사혁신처

□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023년에는 3,675세대에 대하여 4,066억 3,800만원, 2024년에는 3,444세대에 대하여 3,884억 5,2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주택임대보증금 부족분 마련을 위하여 각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 2025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음.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결산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23년	3,571	379,690	3,930	407,591	359	27,901	3,675	406,638
'24년	3,061	307,475	3,319	388,456	258	80,981	3,444	388,452
'25년	2,812	328,555	3,265	381,528	453	52,973	2,758	322,610

※ '25년 결산은 10월 말 실적 반영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주택임대보증금의 집행 추이와 주택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갱신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2026년도 주택임대보증금 역시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임.
-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금이 과소 편성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1. 고객지원사업(3162-302)

- 연금지인 「공무원연금」의 웹진 발간은 이용자 확대와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웹진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고객지원사업은 연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현직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내역사업은 연금지 제작, 연금담당자 교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운영, 재해예방·재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96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고객지원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고객지원사업	7,774	8,374	9,661	1,287	15.4
연금지 제작	2,258	2,258	2,323	65	2.9
연금담당자 교육 등	405	530	476	△54	△10.2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활동 지원	823	1,327	1,209	△118	△8.9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운영	2,625	2,381	2,522	141	5.9
재해예방·재활사업	1,663	1,878	3,131	1,253	66.7

나. 「공무원연금」 웹진 이용 활성화 필요

□ 연금지 제작은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연금 및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고객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유료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1984년 7월 창간 이래 매월 「공무원연금」이라는 월간지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월간 「공무원연금」은 연금정보, 건강·경제·생활정보 등 맞춤형 콘텐츠와 독자참여 코너를 통해 노후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며, 정부 정책과 공단 사업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월간 「공무원연금」 개요(1984.7월 창간)》

구 분	주요 내용
정기구독자	연금수급자 약 189,000명 ※ '24.12월 기준 연금 수급자 695,732명 중 27.2% 구독
발간 주기/ 부수	매월 (연 12회) / 월 192,000부 내외
구독료	연 12,000원(월 1,000원)
규 격	가로 180mm × 250mm, 84면 (표지 4p, 내지 80p)
배 포	정기구독자(189,000부), 유관기관(2,000부), 재발송 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온라인 중심의 정보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4대 연금기관이 연금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간행물의 발간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종이 간행물 발행을 중단하고 웹진³⁴⁾으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사학연금은 종이 간행물과 웹진 발행을 병행하고 있고, 군인연금은 기관지를 발행하는 대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4대 연금 기관지 및 웹진 발간 현황 비교표》

(단위: 세대, 백만원)

연금 (기관)	기관지명	웹진	비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 (종이 발행 중단)	• 분기별 발행 • 2022년 웹진으로 전면 개편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월간 공무원연금	X (종이 발행 병행)	• 월간 발행 • 종이 간행물(PDF 포함) 발간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월간 사학연금	○ (종이 발행 병행)	• 격월간 발행 • 2020년부터 반응형 웹진(*)과 종이 사보를 함께 발행
군인연금 (국군재정관리단)	X	X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연금 소식',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반응형 웹진: 사용자가 접속하는 기기(디바이스)의 화면 크기에 맞춰 웹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자동으로 변하는 웹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ESG경영³⁵⁾의 중요성 부각, 물가 인상으로 인한 발간비용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발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34) 웹진은 '웹(Web)'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로, 출판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만들어 보급하는 잡지를 말함. 기존 종이 잡지와 달리, 동영상이나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고,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35)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ESG경영은 기업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 세 가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 방식을 말함

- 이러한 출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 저감 및 발간 비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는 월간 「공무원연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진 형태로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월간 「공무원연금」의 웹진 발간 개요》

□ 추진 배경

- 구독자의 평균연령 고령화로 신규 퇴직공무원 구독층 확대 및 출판문화 트렌드(웹진, 오디오북) 반영 등 발간 지속성 확보 필요
- 공공기관 ESG 경영의 중요성 부각, 물가 인상(원자재, 우편료) 등 발간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23년도 경영평가 지적) 책자 발행으로 종이 소모, 배송을 위한 탄소배출 발생
 웹진 구독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발행 규모 지속적으로 감축 노력 필요
 → 주 고객층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 점진적 디지털 전환 추진 예정

□ 운영 방향

- 월간「공무원연금」을 PC와 모바일앱을 통해 구독할 수 있도록 웹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 (고객) 파일 다운로드 없이 웹 화면에서 구독 가능(접근성·편리성 강화)
 - (직원) 콘텐츠 추가 및 실시간 수정 등 관리 편리성 제고
- 웹진 연계한 주요 콘텐츠를 고객 이메일과 문자(카카오톡)로 발송
 - 이메일 또는 문자 수신 동의 구독자에게 매월 발송 예정
- 월간「공무원연금」정기구독자 대상 「웹진」서비스 홍보
 - 온·오프라인 서비스 동시 제공으로 「웹진」이용 기회 제공
- 고객 소통 채널을 활용한 신규 연금수급자 웹진 구독 유도
 - 공단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연금지(책)에 웹진 발간 홍보
 - 퇴직예정공무원 대상 각종 안내 자료에 웹진 구독 방법 등 게재 및 사전 퇴직지원교육 시 웹진 신청 유도 등

□ 소요예산 : 1억 5000만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웹진 발간은 최근의 이용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용자 확대와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연금수급자의 연령 특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의 편차를 감안하여 종이 형태의 유인물 발간을 병행하되, 웹진 이용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웹진 중심으로 일원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홍보 등을 강화하여 「공무원연금」 웹진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수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